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9

발의연월일: 2021. 4. 28.

발 의 자: 강득구·양정숙·문정복

김승원 • 박성준 • 이규민

이상헌 · 양이원영 · 서영석

박영순 · 맹성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. 그러나 보호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,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,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 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음.

이에,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또한,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 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, 제22조제3항, 제4 6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8 신설 등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)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다)를 설치·관리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

제47조제1항에 제2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8.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영상정보처리기기의
	설치 등) ① 동물보호센터의
	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
	<u>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</u>
	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
	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
	기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
	한다)를 설치·관리할 수 있다.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
	보호센터의 장이 영상정보처리
	기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
	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
	<u>수 있다.</u>
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	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농림
	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
	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
	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4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46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 </u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1. ~ 4. (생 략)

④・⑤ (생략)

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의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5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③
1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
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을
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
아니한 자
<u>2.</u> ~ <u>5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4
호까지와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47조(과태료) ①
 1. ~ 2의7. (현행과 같음)
2의8.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
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
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 또
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